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33

발의연월일: 2021. 4. 27.

발 의 자:윤주경·권명호·김기현

김미애 · 김선교 · 김영식

김은혜·박성민·박수영

박형수 · 백종헌 · 서병수

서일준 · 서정숙 · 안병길

유의동 • 윤두현 • 윤재옥

유창현 · 이양수 · 이채익

이철규 • 전주혜 • 정점식

정진석 · 정희용 · 조명희

조수진 • 한무경 • 허은아

황보승희 의원(3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원 4명이 독립기념관의 이사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회의장이 이사를 지명할 수 있어 독립기념관 이사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독립기념관 이사를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경우 여야 교섭단체 로부터 각각 2명의 국회의원을 추천받도록 하여 독립기념관 업무의 중립성·독립성을 제고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올바른 국 가관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법률 제 호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 중 "4명"을 "4명."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다음 각 목의 국회의원을 이사로 지명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국회의원 2명

나. 가목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국회의원 2명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② (생 략)	제7조(임원)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3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의	3
원 <u>4명</u> <u><후단 신설></u>	<u>4명.</u> <u>이 경우 국회의장은 다</u>
	음 각 목의 국회의원을 이사
	로 지명하여야 한다.
<u><신 설></u>	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
	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가 추천한 국회의원 2명
<u> <신 설></u>	나. 가목의 교섭단체 외의 교
	섭단체가 추천한 국회의원
	<u>2명</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